

# Occupational Disease

## 직업병에 대한 인정 기준과 보상 절차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글 공주영



직업병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해당 질환과 업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입증 방법이 궁금합니다.

### 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

- 01 유해물질, 물리적 인자, 병원체 등에 의한 질병
- 02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질병
- 03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에 수반해 발생한 질병
- 04 정신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05 그 밖에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직업병 안심센터(상담)

1588-6798





직업병\*이란 직장 내 반복적인 작업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의미합니다. 업무 관련 유해·위험요인에 반복적·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며,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이 포함됩니다.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업무상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노동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포함합니다.

직업병으로 많이 알려진 질병은 분진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청력 질환,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특정 암 질환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이를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신체적 질병에는 명확히 적용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업무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이러한 인정 기준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업병에 대해 산재 요양 급여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전문의를 통해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진단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내가 혹시 직업병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된다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주요 거점 병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직업병 안심센터(대표전화 1588-6798)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병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업무 관련 유해·위험요인에 반복적·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포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골격계 질병
- 호흡기계 질병
- 신경정신계 질병
- 림프조혈기계 질병
- 피부 질병
- 눈 또는 귀 질병
- 간 질병
- 감염성 질병
- 직업성 암
-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